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

일부개정예규(안)

1. 개정이유

-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,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, 당사자들이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
- 일반 단독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고액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고액사건이 일반 단독재판부로 착오 배당된 경우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

2. 주요내용

-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 신설)
-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 신설)
- 배당확정 후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

로 변경된 때 및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·배당된 때 배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, 제26조제3항)

○ 시행일 : 2022. 3. 1.

3.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

일부개정예규(안)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한다. 다만, 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.

1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(변론의 병합 포함)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
2.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(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)

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장판사의 수가 2인 이하인 법원에서는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(다만, 「민사 및 가사소송의
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
제외)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
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
제13조제5항 중 “제4항 제1호” 를 “제4항 제1호, 제3호” 로 하고, 같은 조
제6항 중 “또는 제4항 제1호” 를 “제4항 제1호, 제3호 또는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
여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
때

13.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
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·배당된 때

제26조제3항 중 “제3호 내지 제5호, 제10호” 를 “제3호부터 제5호까지, 제
10호, 제12호 및 제13호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한다. 다만, 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(변론의 병합 포함)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</u></p> <p><u>2.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(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)</u></p>
<p><신설></p>	<p><u>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장판사의 수가 2인 이하인 법원에서는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사건배당 확정 후의 재정합의 · 재정단독 사건의 처리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13조(사건배당 확정 후의 재정합의 · 재정단독 사건의 처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.

⑥ 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, 「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」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~ 3. (생략)

⑦ ~ ⑧ (생략)

제14조(배당확정의 효력) (생략)

1. ~ 1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6조(재배당) ①·② (생략)

③ 제14조 제1호, 제3호 내지 제5호, 제10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, 재

-----.

⑥ -----, 제4항 제1호, 제3호 또는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배당확정의 효력) (현행과 같음)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때

13.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·배당된 때

제26조(재배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, 제3호부터 제5호까지, 제10호, 제12호 및 제13호-

배당 일자,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,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.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④ (생략)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578